

창원지방법원 2021. 11. 10 선고 2021가단116715 판결 [유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길

피 고 E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분의 1에 대하여 2020. 11. 26. 유류분 반환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예지희

